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19

발의연월일: 2024. 11. 22.

발 의 자: 안호영・이학영・이원택

어기구・윤준병・주철현

정을호 • 박희승 • 소병훈

박홍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기능성 양잠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때에는 기능성 양잠농 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 |
| | 계획을 수립할때에는 기능성 양 |
| | 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과 |
| |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
| | <u>야 한다.</u> |
| <u>⑥</u> ~ <u>⑨</u> (생 략) | <u>⑦</u> ~ <u>⑩</u> (현행 제6항부터 제9 |
| | 항까지와 같음) |